

1. 개정이유

「수산업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1일 공포)으로 2024년 1월 12일부터 어구보증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어구보증금액, 취급수수료 등 어구보증금제 이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정치성구획어업의 조업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범위 내에서 관리선을 증톤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마을어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령에 누락 된 손틀어구류를 추가(안 제11조)
- 나. “양식장형망선”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정비(안 제19조)
- 다. 어선감척 등으로 어업구조조정 된 허가는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허가정수에서 제외(안 제41조)
- 라. 어구보증금액을 통발의 종류별로 구분(안 제85조의2)
- 마. 자연재난, 재해 등에 의해 어구가 유실된 경우 어구보증금 환급을 위한 구체적 방법 규정(안 제85조의3)
- 바.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에 표식을 장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취급수수료)을 고시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을 규정(안 제85조의4)
- 사. 해당 연도의 미환급보증의 산출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미환급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을 반영(안 제85조의5)

아. 어구보증금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85조의6)

자.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받기 위한 세부 신청 절차 등 규정(안 제85조의7)

차. 정치성구획어업의 관리선 규모를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별표4)

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제53조, 별표8, 별표11, 별표1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해조틀이”를 “틀이류·손틀어구류”로 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양식장형망선”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한다.

제4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또는 어업조정(어선감척 등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53조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제6장에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어구보증금액)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액은 별표 16과 같다.

제85조의3(보증금환급의 예외 적용 신청 등) ① 영 제49조의3제3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 신청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 제83조제1항의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어구

보증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1. 피해발생 일시
2. 피해원인
3. 피해어구 설치 해역(경위도 또는 해구)
4. 피해어구 현황(어구 수량, 어구보증금액)
5. 피해어구 구입처
6.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사실 확인서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어구보증금 환급 신청을 보고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어구보증금 환급여부, 환급금액 등을 결정하여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어구보증금 환급 신청자에게 어구보증금의 환급여부, 미환급 사유 및 환급금액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73호의3서식에 따라 회신해야 한다.

제85조의4(취급수수료 산정)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취급수수료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의 표시 장착 비용
2. 회수된 폐어구의 운반 비용
3. 그 밖에 어구보증금 취급에 드는 비용

제85조의5(미환급보증금 산출 등) ①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의 미환급보증금은 별표 17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어구별 미환급보증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별지 제73호의4서식의 미환급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적정성 및 개선사항 등을 검토한 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1. 미환급보증금의 산출 명세 및 증명서류
2. 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비용의 명세 및 증명서류
3. 전년도에 미환급보증금을 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서

③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미환급보증금의 적정성 및 개선사항 등을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5조의6(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사업) 법 제83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어구관리 및 보증금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2. 어구보증금 환불 표식의 제작·공급
3. 어구의 회수
4. 조사·연구

5. 교육·홍보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85조의7(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 등) ① 영 제49조의5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받기 위하여 별지 제73호의5서식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 산출명세서

3. 어구보증금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활용 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를 “보고”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중 “양식장형망선”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양식장형망선”을 “마을어장형망선”으로 한다.

별표 4 중 “(제20조제1항 관련)”을 “(제21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4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치성구획어업 관리선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범위에서 관리선의 규모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받은 어구의 규모(부속어구 포함) 및 형태를 확대·변경 할 수 없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달리 정한 관리선의 현황 및 운영실태를 반기마다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8 아목(종전의 바목) 어업의 종류란 아목 중 “연안자망어업”을 “연안복합어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마을어업의 어업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마을어업의 어업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5 제1호 중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에 어구”를 “어구”로 한다.

별표 16 및 별표 1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73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6]

어구보증금액(제85조의2 관련)

품목구분	금액기준
스프링 통발	1,000원/개
원형 통발	2,000원/개
반구형 통발	2,000원/개
사각 통발	3,000원/개
붉은대게(홍게, 대게) 통발	3,000원/개

■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7]

어구별 미환급보증금액 산출 계산식(제85조의5제1항 관련)

품목구분	금액기준
스프링 통발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1,000원
원형 통발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2,000원
반구형 통발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2,000원
사각 통발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3,000원
붉은대게(홍게, 대게) 통발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3,000원

보증금환급의 예외 적용 대상의 어구보증금 환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어선번호	
보증금환급 신청 정보	피해정보	① 피해발생 일시	② 피해원인
		③ 피해어구 설치해역(경위도 또는 해구)	
	지급정보	④ 피해어구 현황(어구 수량, 어구보증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어구보증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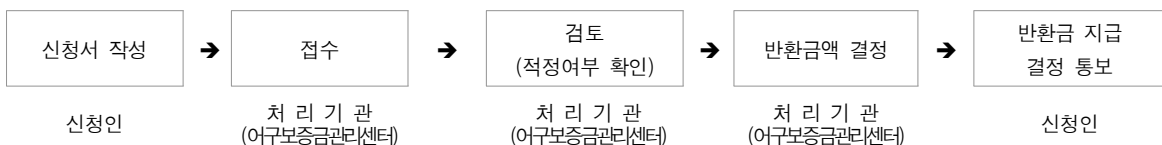
어구보증금관리센터장 귀하

첨부서류	1.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사실확인서 2. 피해어구를 구입한 영수증 등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어구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작성합니다.
- 「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작성합니다.
- 피해어구를 설치한 해역의 위치를 경위도 또는 해구로 표시하여 작성합니다.
- 피해어구의 수량, 피해어구를 구입할 때 지불한 어구보증금액을 작성합니다.
- 피해어구를 구입한 어구 생산업체 또는 판매업체 상호를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보증금환급의 예외 적용 대상의 어구보증금 환급여부 통보서

1. 신청인 성명:
2. 생년월일:
3. 어구보증금 환급여부(미환급시 사유 작성):
4. 피해어구 현황(어구수량 및 어구보증금액):
5. 환급금액:

「수산업법 시행령」 제4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5조의3제3항에 따라 보증금 환급의 예외 적용 대상의 어구보증금 환급여부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어구보증금관리센터장 직인

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

제출인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년도 미환급 보증금 사용실적	① 미환급보증금(백만원)	② 사용 용도	지출액(백만원)

()년도 미환급 보증금 사용계획	① 미환급보증금 예상액(백만원)	② 예상 사용 용도	지출 예상액(백만원)

「수산업법」 제82조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5조의5제2항에 따라 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어구보증금관리센터장)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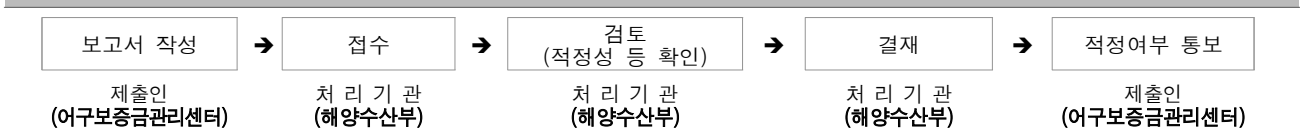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미환급보증금의 산출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된 비용의 명세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어구등의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나. 어구등의 보관, 회수거점 등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다. 어구등의 효율적 회수와 처리 방안의 연구·개발 라. 전년도에 받은 어구보증금보다 전년도에 어구보증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補填) 마. 어구등의 회수에 드는 비용 바. 취급수수료 지급 사. 어구보증금과 취급수수료의 집행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아. 어업인 등 지역주민 지원사업 자.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① 미환급어구보증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어구·부표별 미환급보증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원형통발 미환급보증금액 =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2,000원
 반구형통발 미환급보증금액 =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2,000원
 스프링통발 미환급보증금액 =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1,000원
 사각통발 미환급보증금액 =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3,000원
 붉은대게(홍게, 대게) 통발 미환급보증금액 = (해당 연도에 출고된 통발 개수 - 해당 연도에 반환된 통발 개수) × 3,000원
 ② 미환급보증금의 사용 용도는 첨부서류란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어구보증금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한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재정지원 신청	신청내용 [] 창업 [] 산업육성 [] 시장조사 [] 기타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기술지원 신청	신청분야 [] 기술연구·개발 [] 기술 이전·활용 [] 기타 ()	
	기술구분 [] 자체적으로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기술 []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이전받았거나 이전받을 기술 []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권을 확보할 계획이 있는 경우 (원천기술 보유기관:)	
	지원기간:	
	소요경비 용자: 백만원, 보조: 백만원, 자체: 백만원, 합계: 백만원	

「수산업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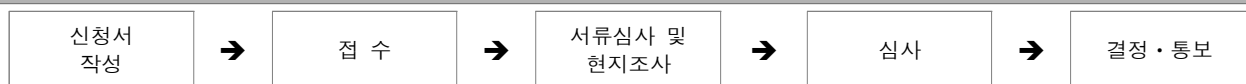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요경비 산출명세 1부 3. 어구보증금 관련 기술개발·활용 실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어구보증금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한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 · 채취방법)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이하 “마을어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4조에 따라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이 깊어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에 따른다.	제11조(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 · 채취방법) ----- -----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해조틀이</u> 또는 갈퀴류	2. <u>틀이류·손틀어구류</u> ----- -----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제19조(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 또는 승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제19조(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양식장형망선</u> 또는 <u>형망어업</u>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1. 2. (생 략) ④ ~ ⑦ (생 략) 제41조(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u>마을어장형망선</u> ----- ----- -----. 1. 2.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1조(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또는 어업조정(어선감척 등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u>
제53조(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법 제4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가. ~ 다. (생 략) 다. (생 략) 2. (생 략)	제53조(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 ----- ----- -----. 1.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 다목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85조의2(어구보증금액)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액은 별표 16과 같다.

제85조의3(보증금환급의 예외 적용 신청 등) ① 영 제49조의3제3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 신청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법 제83조제1항의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어구보증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1. 피해발생 일시
2. 피해원인
3. 피해어구 설치 해역(경위도 또는 해구)
4. 피해어구 현황(어구 수량, 어구보증금액)
5. 피해어구 구입처
6.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사실 확인서 등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어구보증금 환급 신청을 보고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신 설>

<신 설>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어구보증금 환급 여부, 환급금액 등을 결정하여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어구보증금 환급 신청자에게 어구보증금의 환급여부, 미환급 사유 및 환급 금액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73호의3서식에 따라 회신해야 한다.

제85조의4(취급수수료 산정)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취급수수료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의 표시 장착 비용
2. 회수된 폐어구의 운반 비용
3. 그 밖에 어구보증금 취급에 드는 비용

제85조의5(미환급보증금 산출 등)

①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미환급보증금은 별표 17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어구

별 미환급보증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별지 제73호의4서식의 미환급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적정성 및 개선사항 등을 검토한 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1. 미환급보증금의 산출 명세 및 증명서류

2. 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비용의 명세 및 증명서류

3. 전년도에 미환급보증금을 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서

③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신 설>

<신 설>

부터 미환급보증금의 적정성 및 개선사항 등을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5조의6(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사업) 법 제83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어구관리 및 보증금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2. 어구보증금 환불 표식의 제작·공급
3. 어구의 회수
4. 조사·연구
5. 교육·홍보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85조의7(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 등) ① 영 제49조의5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받기 위하여 별지 제73호의5서식의 재

제91조(조업상황 등의 보고) ①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또는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으로 조업상황 및 어획(해양포 유류를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실적 등을 <u>해양수산부장관</u> <u>에게 보고</u>해야 한다.	<u>정적·기술적 지원 신청서에 다</u> <u>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u> <u>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u> <u>다.</u> 1. <u>사업계획서</u> 2. <u>소요경비 산출명세서</u> 3. <u>어구보증급 관련 연구 및 기</u> <u>술 개발·활용 실적</u>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 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등기사 항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 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 하도록 해야 한다. 제91조(조업상황 등의 보고) ① - ----- ----- ----- ----- ----- ----- ----- <u>보고</u>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